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11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하태경·서병수·황보승희

박재호 · 장제원 · 김미애

전봉민 · 정동만 · 백종헌

이주환 · 최인호 · 김도읍

안병길 • 이헌승 • 김희곤

박수영 • 전재수 • 조경태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홍수, 태풍,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, 현행법을 포함하여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.

특히 주생계수단 여부를 근거로 하여 농업, 어업, 임업,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시, 시설복구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. 반면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행 재난지원 방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

및 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⑤ 제4항에 따라 정하는 지원 기준과 관련된 피해금액의 산정에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·염생산업인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상공인 시설 복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제3항제7호의
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	③
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	
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	
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	,
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	
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	
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	
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	
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	
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	
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	
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	
아니한다.	<u>.</u>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의2.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
	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8. • 9. (생 략)	8.•9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라 정하는 지원

⑤ ∼ ⑦ (생 략)

 기준과 관련된 피해금액의 산

 정은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

 ·염생산업인 및 소상공인 등

 에 피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 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

 항까지와 같음)